##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59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권영세·강대식·안철수

인요한 • 주호영 • 김상훈

이인선 · 서일준 · 구자근

김도읍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대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가 가입한 다른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노동조합의 방해행위)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1.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 2.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제82조제1항 중 "不當勞動行爲"를 "부당노동행위 또는 노동조합의 방해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종료하고 不當勞動行爲가"를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이"로, "使用者에게"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에"로, "하며, 不當勞動行爲가"를 "하며, 부당노동행위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使用者와"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과"로 한다.

제85조제5항 중 "使用者가"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로 한다.

제90조 중 "第77條 또는 제81조제1항"을 "제77조, 제81조제1항 또는 제81조의2"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81조의2(노동조합의 방해행위)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위	
	하여 행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이하 "노동조합의 방해행위"	
	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	
	해하는 행위	
	2.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	
	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	
	<u>는 행위</u>	
第82條(救濟申請) ① 使用者의 <u>不</u>	第82條(救濟申請) ① <u>부</u>	
當勞動行爲로 인하여 그 權利	당노동행위 또는 노동조합의 방	
를 침해당한 勤勞者 또는 勞動	해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등"	
組合은 勞動委員會에 그 救濟	<u>이라 한다)</u>	
를 申請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84條(救濟命令) ① 勞動委員會	第84條(救濟命令) ①	
는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審問		
을 종료하고 不當勞動行爲가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등이-	
成立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使	<u>사</u>	
用者에게 救濟命令을 발하여야	용자 또는 노동조합에	
하며, 不當勞動行爲가 成立되지	하며, 부당노동행위등이	

아니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ユ
救濟申請을	棄却하	는 決定	È을
하여야 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判定 ・命令 및 決定은 書面으로 하 되, 이를 당해 <u>使用者와</u> 申請人 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생략)

第85條(救濟命令의 확정) ① ~

- ④ (생 략)
- ⑤ 使用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訴訟을 제기한 경우에 管轄法院은 中央勞動委員會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써,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 中央勞動委員會의 救濟命令의 전부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수 있으며,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決定을取消할 수 있다.

第90條(罰則) 第44條第2項, 第69 條第4項, <u>第77條 또는 제81조제</u> <u>1항</u>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 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사용자 또는 노동
<u> 조합과</u>
③ (현행과 같음)
第85條(救濟命令의 확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第90條(罰則)
제77조, 제81조
제1항 또는 제81조의2